

서울특별시

원본대조필 2/6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3707-9355~6 (FAX)3707-9369
 중소기업과 과장 추진갑 담당사무관 정행교 담당자 고석창

문서번호 중소 55471-111
 시행일자 1998. 11. 12.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취급		시 장
보존		신 309
산업경제국장	전 결	
중소기업과장	[Handwritten Signature]	법무담당관 심사필 산업정책과장 [Handwritten Signature] 기업행정담당사무관 [Handwritten Signature]
기안	고 석 창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입법예고(안)

1. 우리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중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에 창업보육센터는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
2.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볼수 없으므로 이의 삭제를 요망하는 시정권고가 있어(행자부 공기 13330-118. '94.4.22)
3. 현 공공시설의설치및운영위탁에 관한조례 및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향후 유사시설 확충시 신속하고 적기에 대처하는등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단일조례를 별안과 같이 제정 운영하고자
4.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의뢰코자 하오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관

참조 홍보담당관

제목 입법예고 의뢰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산 업 경 제 국 장

(제3안)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공기업과장

제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입법예고 사항 보고

1. 공기 13330-118('94.4.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삭제 권고와 관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8-602 호

일시	1998.11.6	제 602 호
장소	서울특별시청	법무국
이성복	이재환	박준봉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내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함에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전화 : 3707-9351,935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998년 11월/일

서울특별시장

가. 제정사유

현재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와 일부 개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시설물

명칭	위치	기능
서울창업보육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
서울애니메이션지원센터	중구 예장동 8-145의 1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송파구 잠실1동 10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도봉구 창동 1-10	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

(2)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 민간에 위탁운영 원칙

(가) 위탁운영기간 : 3년(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나) 수탁자 선정 기준

-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장비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 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 사무의 수행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시설사용자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종별	구분	대부료(사용료)	비고
중소기업입주(입점)시설	대부료	연간당해 재산평가액의 10/1000이상	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준용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사용료	여의도:700원(㎡/일) 창동:600원(㎡/일)	단, 비수기(1,2,7,8,12월)에는 50%범위내 감면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입점)한 기업이나 전시장 등 지원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시설(은행, 창업투자회사, 식당, 약국 기타의 편의시설 등) 등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25/1000이상을 대부료 등으로 징수, 이 경우 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준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창업·운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의 기본원칙)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설의 사용 등) ① 지원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소정의 대부료·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한다.

제3장 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위탁기간 등) ①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사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 수탁자가 계속하여 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가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위탁계약) 시장은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지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부료 등의 수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수있으며,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대부료·사용료등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자는 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 위탁운영하는 지원시설의 회계는 시설별 또는 수탁주체별로 구분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제5조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나 시설의입장료, 시설장비이용료등(이하“이용료등”이라한다)을 그 이용자 등에 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등은 수탁받은 지원시설의 관리·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다.

④ 제2항의운영결과 잉여금은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이의 보완 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원시설 사용신청자의 사용 등의 허용여부

4. 기타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사항에 관한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위탁계약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시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정위원회는 지원시설별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시장이 구성·운영하며, 당해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대상 지원시설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한 때와 동시에 해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지원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지원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지원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하여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계약(협약)내용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1 서울특별시립공공시설중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 중소기업과)”란은 이를삭제한다.

구분	주관국(과)	시 설 명
삭제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산업지원센터 ○서울애니메이션지원센터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2. 별표2 위탁사무중 “지역경제국(경제진흥과, 중소기업과)”란은 이를 삭제한다.

구분	주관국(과)	사 무 명
삭제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산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서울애니메이션 지원센터 관리운영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실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창동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관리 운영

【별표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 위치 및 기능

명 칭	위 치	기 능
서울창업보육센터	강서구 동촌동 647-26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중구 예장동 8-145의 1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
11월 13일 기업제품 전시회 개최	송파구 잠실동 10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도봉구 창동 1-10	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

【별표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대부·사용료 기준표

1. 중소기업입주(입점)시설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종 별	구 분	대부료(사용료)	비 고
중소기업입주 (입점)시설	대 부 료	연간 당해재산평가 액의10/1000이상	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를 준용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사 용 료	여의도:700원(m ² /일) 창 동:600원(m ² /일)	단, 비수기(1,2,7,8,12월) 에는 50%범위내 감면
<p>다만,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입점)한 기업이나 전시장 등 지원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시설(은행, 창업투자회사, 식당, 약국 기타의편의 시설 등) 등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가가액의 25/1000이상의 대부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준용</p>			